

##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실증연구

유우\*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확대되고 있는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을 고용, 임금 및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불안정노동 특징을 실증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 농민공의 형성배경, 특징 및 이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 불안정노동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중국 맥락에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① 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②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③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형계약, ④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의 4가지로 불안정성의 '정도(degree)'를 구분하여 고용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어 임금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험의 배제 측면에서도 농민공의 불안정성을 정도를 구분하여 측정하고, 마지막으로 고용관계, 임금수준 그리고 사회보험의 측면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민공을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안정한 노동집단, 그리고 안정적인 노동집단으로 나누어 불안정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중국노동력동태조사 2차(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매우 불안정한' 농민공과 '불안정한' 농민공은 전체 연구대상의 93.4%를 차지하여 중국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의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농민공의 심각한 불안정노동에는 특히 고용불안정성이 주요 속성으로 드러났는데 90% 이상의 농민공이 도시의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보이는 농민공의 다차원적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국의 제도적 맥락에서 형성된 복잡한 고용형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비정규직' 또는 '비전형노동'만으로는 불안정노동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함의를 준다. 중국 호구제의 경로의존성과 능력이원경제구조의 제도결합과 함께 형성된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중국의 제도와 불안정노동자확대의 관계에 대한 이후 연구뿐만 아니라 불안정노동의 개념에 대한 일반 논의의 확장에 있어서도 함의를 준다.

주제어 중국 농민공, 불안정노동, 중국노동력동태조사, 호구제

\* 주저자

\*\* 교신저자

## I. 머리말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중국경제는 중미 무역전쟁 이후 또 한 번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 노동시장에서도 여러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농민공의 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확대 중이다. 2021년 중국정부는 설날 동안 농민공의 귀향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sup>1</sup>들을 공포 및 실시하였다. 이는 농민공의 불평등한 지위와 불안정성, 그리고 농민공의 권익 보장 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확대되고 있는 농민공의 규모와 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대한 실증분석과 더불어 기존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중국의 불안정노동이자 도시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민공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중국 농민공이란 도시에 진출하여 상주하며 6개월 이상을 생업에 종사하는 농촌 출신의 노동자를 의미한다. 즉, 호적이 농촌에 소속되어 있지만 도시 지역의 비농업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농민공 근로자는 과거 중국의 계획경제 시대의 도농(城乡) 분할 통치 시기의 핵심인 호구제와 같은 사회관리제도와 개혁개방 이후에 도입된 시장경제체제가 결합된 산물이라 할 수 있다(杜景山, 2013; 迟帅·金银, 2012; 张斌峰, 2007).<sup>2</sup>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고 기존 계획경제에 시장적 개념을 반영하면서 경제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지난 30년간 10%가 넘는 GDP 성장률을 보이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지만(OECD, 2013; 김유휘 외, 2015),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중국의 개혁 이후 변화된

<sup>1</sup>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날동안 농민공은 도시에서 남도록 권고한 일련의 정책을 만들었다. 예를 들어 명절을 맞아 고향에 방문하고 싶은 경우, 핵산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향에서 도착한다면 14일 동안의 자기격리와 두번의 추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민공이 다시 도시에 돌아가 취직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에서 다시 14일간의 자기격리와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sup>2</sup> 중국 농민공은 호구 소재지에서 비농산업에서 취직하는 '당지 농민공(当地农民工)'과 호구 소재지 외에서 비농산업을 종사하는 '외출 농민공(外出农民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농민공 논의의 대부분은 외출 농민공으로 '도시로 진입한 농민공(进城农民工)'이다(중국국가통계청, 2018).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불안정노동자 집단인 농민공(农民工)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다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刘其赉, 2019; 李强, 2015; 胡鞍钢·杨韵新, 2001; 刘爱玉·黄俊平, 2012).

중국 노동시장은 개혁 이후 빠른 경제 발전을 거치며 다수의 농민공이 도시의 비국유부문으로 유입되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서비스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했고 대량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발생했다. 표준적 고용관계를 가지고 공식적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노동시장의 특징을 가진 외부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厉以宁, 2015; 김유휘 외, 2015).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서비스업은 현재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夏杰长, 2019). 서비스업의 확대와 함께 불안정노동의 일상화가 목격되면서 학계에서도 불안정고용(precarius employment)과 비정규고용(non-standard employment) 및 비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sup>3</sup> 등의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周毕芬, 2016).

그러나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존의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는 다른 독특한 노동시장을 형성하였다. 중국의 도농이원경제구조하에 형성된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원화된 중국노동시장의 형성 과정에서 확대된 농민공의 불안정성에 대해 단편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중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관계를 이해하고 농민공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인 불안정노동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호구제와 같은 제도들이 서로 결합하여 어떻게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실증연구들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논의들은 농민공의 저숙련과 저학력 등 인적 자본에 근거하여 이들의 불안정성을 설명한 경우가 많아, 전국단위의 실증적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이 체계적으로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sup>3</sup> 한국에서 informal employment는 비공식 고용으로 번역하는데 중국에서 비공식 취업으로 번역한다(서정희, 2015; 钱叶芳, 2018).

본 연구는 중국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확대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인 농민공의 불안정성에 대한 실증적 이해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중국 농민공의 정의와 형성 배경, 규모와 특징 및 농민공이 직면한 다양한 불안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함께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개념을 소개하고,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본 연구는 중국노동력동태조사 2차(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 자료를 활용하여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의 특징과 모습을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용의 불안정성을 중국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4가지로 재분류하여 고용관계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동의 불안정성은 다시 고용형태, 임금수준, 사회보험 배제 여부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 그 불안정성의 정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차원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에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의 정도를 다시 매우 불안정, 다소 불안정, 다소 안정, 안정 4가지로 나누어 구분하여 농민공의 다차원적 불안정노동의 정도(degree)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농민공의 단일적 속성에 집중한 각각의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다차원적으로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 정도를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통해 중국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불안정노동자인 농민공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경로의존성과 불안정노동의 형성 관계에 대한 연구에 함의를 주고,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논의의 폭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II. 중국 농민공 형성의 배경과 특징

### 1. 농민공 형성의 배경

농민공 형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호구제와 개혁개방정책의 제도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이루어진 농민공의 증가 현상은, 중국의 개

혁·개방 이후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까지 호구제, 노동시장제도 경제발전 속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간의 큰 격차에서 기인한다.

먼저 농민공의 형성 배경인 중국의 호구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호적<sup>4</sup>상의 호구(戶口)는 가구로서의 주호(住戶)와 그에 속한 인구를 함께 칭하는 속성이고, 가족 혹은 개인에게 부여되며, 실질적인 의미는 ‘특정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국은 호구를 이용하여 공민을 관리·통제해 왔는데 이러한 중국의 특이한 호적제를 호구제도라 칭한다(은석인, 2018). 호구제도는 원래 설치한 인구 현황 파악, 정치와 사회생활 권리 보호 및 치안 관리 등 사회질서를 유지될 수 있는 기능(彭希哲 外, 2009)뿐만 아니라 호구 전환 과정 중 심사와 허가를 통해 국민의 거주이전 등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막는 제도로 이용되었다(叶晨钰·王清 2013). 호구통제로 인하여 농촌 지역에서 태어난 농민들은 자유롭게 도시로 이동할 수 없다. 이에 도시와 농촌 간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발생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분절은 중국의 도농이원구조가(城乡二元结构)를 형성하였다(赵一蓉, 2018; 魏玉霞, 2018).

이런 사회구조는 경제개발이 도시 지역에서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일등 공민’으로서의 도시 인구나 ‘이등 공민’으로서의 농촌인구라는 이원적 사회적 지위가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彭希哲 外, 2009). 중국의 호구제는 인구제도로만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며, 일련의 법과 제도 및 관습은 물론이고 정치와 사회복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살펴봐야 한다(彭希哲 外, 2009). 호구제도로 인해 농민은 사회보장,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노동권에서도 배제되고 있다(陶卫华·杜娟, 2008; 김인, 2013; 김병철, 2017). 정리하자면, 중국 정부는 호구제를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을 분할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 농촌과 도시 간 분절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으로 산업구조가 공업과 농업으로 나뉘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도시호구인구와 농촌호구인구로 나누는 정책적인 차별이 형성되었다.

<sup>4</sup> 호적은 한국의 본적(本籍)처럼 선조의 거주지를 말하며 조적지(祖籍地) 혹은 원적(原籍)이라고도 한다(Huang,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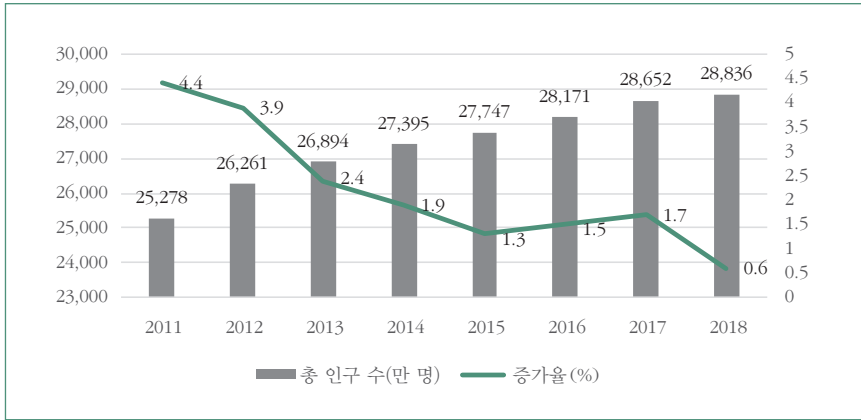


그림 1 2011~2019년 농민공의 총 인구 수 및 증가율

농민공이 확대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도농이원경제구조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김유휘 외, 2015; 김인, 2013).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면서 농촌에서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나타났다(은석인, 2018). 다른 한편에서는 도시에서도 큰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개체(个体)경제-사영경제가 활발해졌고 자본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졌다. 또한, 식량배급제가 축소되고 필요 물자의 현금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농민을 농촌과 농업에 묶어 두었던 호구제도를 완화시켜 농민의 도시 진출과 도시경제의 참여를 점차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 중국 역사상 ‘1세대 농민공’이 형성되었다(彭希哲 外, 2009).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농민공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소득격차의 확대는 농민공이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Pi and Zhang, 2018; Cui et al., 2015). 농민의 입장에서 도시로의 진출은 임금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고, 도시의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의 유입으로 노동력 결핍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개혁개방 40년 후의 2019년 말까지 전국 농민공의 총인구는 2억 9,077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5.85%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64.9%였고 여성은

35.1%였다. 농민공의 확대 폭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 규모는 지속적인 확대추세에 있다. 농민공의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 중이다. 2019년 농민공의 평균연령은 40.8세로, 50세 이상의 농민공 비율이 24.6%로 연령은 5년간 연속적으로 증가했다(중국국가통계국, 2020).

## 2. 농민공의 특징과 삶 전반에서의 불안정성

먼저 농민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농민공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중국국가통계국(2019, 이하 통계국)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말까지 전국 농민공의 총인구는 2억 8,836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5.73%를 차지했고, 남성은 65.2%로 여성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주로 가구주로 드러났다. 농민공의 연령구조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평균연령은 40.2세로, 50세 이상의 농민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5년간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8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22.4%)이 50대였다.

인적자본 특징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저학력과 저숙련 특징을 가지고 있다. 72.6%의 농민공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보이고 있었다(중국통계국, 2019). 대부분의 농민공이 9년 의무교육만 받고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또한 저학력뿐만 아니라 농민공의 저숙련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 통계국(2018)에 따르면 2017년 직업훈련을 받은 농민공의 비율은 32.9%로 2015년 33.1%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그중에서 비농업 관련 직업훈련을 받은 비율은 30.6%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농민공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이런 직업훈련은 주로 정부가 실행한 일반적인 단기 교육으로 이루어지기에 농민공 취업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중국 지방정부의 지방 보호주의 경향이 있어, 직업훈련 정책을 제정할 때 외지인(外地人, 농민공을 포함)을 배제한다는 점이다. 농민공의 높은 유동성은 기업 입장에서 직업훈련비용 지출 동기를 낮추게 된다(刘林平 外, 2006). 뿐만 아니라 정부는 보통 자격증 유무에 따라 취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농민공의 자격증 보유 비율 또한 높지 않다(万向东, 2008; 王建, 2017). 즉, 각 지방정부의 지방보호주의로 인해 정부로부터도 농민공은 기술습득 기회가 없고, 기업의 숙련투자도 없

어서, 농민공이 확대되는 동안 농민공의 인적 자본과 숙련은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른 노동집단과 달리 농민공은 지역 간, 업종 간 등 유동의 원인이 보통 승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임금이 높은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기에, 숙련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李强, 2018).

일자리 특징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주로 비공식부문에서 근무하고,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의 문제에 처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절반 이상의 농민공이 제조업(27.9%)과 건설업(18.6%)에서 근무하고 있는데(통계국, 2019), 주로 중소기업과 비공식부문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万向东, 2008; 袁晓辉·张丽宾, 2006; 李强·唐壮, 2002). 공유제 단위(单位)<sup>5</sup>에서 근무한 농민공은 13.1%에 불과한 반면에 86.9%의 농민공은 비공유 단위에서 근무했다(纪韶, 2011). 또한 농민공의 노동계약 체결률도 매우 낮았다. 중국국가통계국(2017)에 의하면 2016년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의 35.1%에 불과했다. 노동계약이 없으면 노동자가 임금, 사회보험 등 노동 관련 권익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노사간 문제가 발생할 때 농민공은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王建, 2017). 다음으로, 근로조건 측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나 비공식부문에서도 농민공은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중국 산업재해 피해자 중에서 농민공의 비율이 91.6%에 달한다(孟繁元 外, 2006).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농민공의 현황을 살펴보면, 농민공들은 학력이 낮고 전문 기술 수준이 낮으며 직업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의 건설업, 음식 서비스업 등 부문에서 저숙련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또한 높은 고용불안정성, 또 높은 이직률과 유동성으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는데 이미 분석된 여러 지표들을 통해, 농민공의 불안정성이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王建, 2017; 万向东, 2008; 李强·唐壮, 2002; Pi et al., 2015; 김병철, 2017). 농민공의 불안정성은 노동불안정뿐만 아니라 도시 정착 문제, 가족 분리와 자녀 교육 문제 등 다양한 삶의 불안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농민공은 도시

<sup>5</sup> 공유제 단위(单位)는 정부기관(政府机关), 사업단위(事业单位), 국유기업 등 고용단위 유형이 포함되며, 공식부문의 범주와 비슷하다. 비공유제 단위는 공유제 단위 외의 다른 소유제 형식의 고용단위형태인데, 사영기업, 외자기업, 합자기업 등이 포함되었다.

로 진출해 산업노동자가 됐으나 농민 신분 때문에 취업기회, 노동 안전성, 의료, 교육, 보험 등 사회보장 등에서 여전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어, 도시에서 가장 보호되지 않는 ‘취약집단’과 ‘소외집단’으로 설명된다(李强, 2015). 다른 한편 농민공의 시민화(市民化)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통제가 느슨해진 반면 중국의 호구제도는 여전히 엄격한 등급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도시에 들어가 일하는 농민들은 도시 인구나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이는 도시 내부 ‘현지인’과 ‘외지인’ 두 집단의 ‘신이원구조(新二元结构)’의 형성으로 이어졌다(白南生 외, 2008). 심지어 도시에서는 외지 농민공들이 모여 사는 ‘성중촌(城中村)’이 형성되어 있다. 농민공은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온 핵심집단이지만 도시에서 정착할 수 없고 도시 빈민층의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화 진행이 여전히 느리다(신동윤, 2011). 중국 정부는 2019년부터 일부 지역의 호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취소하는 정책을 집행했으나 대도시 인구 규모 통제정책과 모순이 있다.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시 등 대도시 도시정착의 누계점수제(落户积分制)는 농민공 시민화의 장애물이 되었다(姚先国外, 2016).

또한 농민공의 도시화 및 시민화와 밀접하게 관련한 문제는 농민공과 가족 분리 및 중국의 우수아동(留守儿童)<sup>6</sup> 문제다. 2018년 8월 농촌 지역에 있는 우수아동은 687만 명에 달한다(중국 아동복지와 보호 보고서, 2019). 2017년 농민공이 가족들과 같이 도시로 이동한 비율이 18.8%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농민공이 가족과 여전히 분리 상태이며, 이 중에서 자녀와 부모의 분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邹杰玲·王玉斌, 2018).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용, 공공서비스 배제와 농민공의 높은 유동성 때문에 농민공 자녀는 부모와 함께 이주할 수 없다(邹杰玲·王玉斌, 2018). 또한 농촌 지역에 있는 우수아동은 학업적, 심리적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폭력, 정신폭력, 성폭력과 방임의 비율이 각각 65.1%, 91.3%, 30.6%와 40.6%에 달한다(2019년 중국 우수아동 정신적 상황 백서, 2019; 陈晓丽, 2011). 종합하면 농민공은 가족과 분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농민공 자녀의 교육환경 측면을 살펴보면 불평등과 빈곤 등의 문제가 농민공 세대 간 계승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sup>6</sup> 우수아동이란 부모 중 한 명이나 모두 외지로 나가서 3개월 이상 취직하기 때문에 고향에 남겨 지거나 친척집에서 기숙하여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농민공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삶의 전반에 있어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의 불안정성은 중국의 호구제, 지방보호정책, 대도시 도시정책의 누계 점수제 등의 제도결합 속에서 도시 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농촌지역의 유희인력이 생성이 결과한 모습이다. 이러한 제도결합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도시)노동시장에서 농민공의 차별적인 경험과 낮은 임금, 일자리로 나타나며 삶의 다른 영역의 불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중국 농민공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중국에서의 고용관계를 새롭게 분류하거나 및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불안정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은 어떠한 특성과 성격으로 나타나는지 기존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들의 불안정노동의 모습을 이해하고, 특히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고용관계에 집중하여 불안정노동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 III. 농민공의 불안정노동

중국 농민공이 보이는 불안정노동의 속성과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그 동안 불안정노동의 개념이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비스경제의 확대와 함께 불안정노동은 표준적 고용관계의 정규직 노동에서 벗어난 고용형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주목받아 왔다(이승윤 외, 2017a). 불안정노동의 개념은 197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되어 논의되었고, 영미권에서는 주로 1980년대 초반부터 보호받지 못한 고용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백승호 외, 2017 재인용). 단, 국가, 지역, 정치시스템 등 경제 사회적 맥락과 노동자의 성별, 연령, 계급, 특징 인구 집단 및 직업 집단 등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따른 불안정노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李强, 2015; 백승호, 2014; 胡鞍钢·杨韵新, 2001; ILO, 2011) 불안정노동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합의되고 있지 못하다(Kalleberg, 2000; 백승호 외, 2017; 이승윤 외, 2017b).

불안정노동 개념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불안정노동에 속한 사회경제적 집단

과 불안정노동의 속성에 주목하였다(이승윤 외, 2017a; Kalleberg, 2009; Kalleberg, 2000; Standing and Kiniti, 2011; Kroon and Paauwe, 2013). 즉, 누가 불안정노동자인가에 대해 주로 기간제, 시간제, 파견제 등 비전형고용을 포함하여 비정규고용(non-standard employment) 형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Polivka and Nardone, 1989; Kalleberg, 2000, 2009; 강남훈, 2013; 백승호, 2014; 서정희, 2015; 이승윤 외, 2017b; 김유휘 외, 2015; 钱叶芳, 2018; 李强, 2015; 肖红梅, 2015; 刘爱玉·黄俊平, 2012; 胡鞍钢·赵黎, 2006). 반면, 무엇이 불안정노동의 속성인가에 대해서는 주로 노동자의 결핍된 상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임금과 고용 불안정 및 사회보장 불안정이 법에서 배제 등에 주목하여 불안정노동의 속성을 정의했다(백승호, 2014; 서정희, 2015; 백승호 외, 2017 재인용; 王丽平, 2013). 그러나 이승윤 외(2017)는 기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였다. 먼저, 불안정노동을 정의할 때 이분법적으로 특정한 사회경제적 집단을 불안정노동자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단일한 불안정노동 속성에 주목한 것, 마지막으로 주로 낮은 임금수준에 주로 주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누가 불안정노동 집단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임금과 같은 불안정노동의 단일속성에만 접근하고 불안정노동을 정의하는 것은 다차원적 속성을 가진 불안정노동을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정노동의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이승윤 외(2017a)는 불안정노동을 분석할 때 고용관계, 임금수준과 사회보험에의 포괄성 등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이승윤 외, 2017a). 비슷하게 강남훈(2013)은 불안정노동은 직업 안정성이 낮고, 임금이 낮고 사회보장이 낮고, 작업장 안정도가 낮고,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농민공의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논의들에 따르면 농민공은 임시적 고용, 계절적 고용, 가정 도우미, 일시고용, 파트타임 및 파견과 같은 임금노동이면서도 비전형적 고용관계로 일하고 있다(李强, 2015; 唐美玲, 2013). 농민공의 고용 지위를 살펴보면 전체 농민공 중 임금근로자 비율이 83.4%에 달한 반면 자영업자 농민공의 비율은 16.6%에 불과했다. 이어서 고용 지속성을 노동계약서의 체결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민공의 노동계약서 체결률은 35.1%에 불과해, 대부분 농민공은 노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민공의

대표적인 특징인 ‘철새식’ 유동취업패턴은 농민공들이 도시와 농촌을 반복적으로 이동하며, 업무 지속 시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아, 노동시장에서 줄곧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있게 하는 데 기여한다(李强, 2009; Knight and Yueh, 2004).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농민공의 고용형태는 비전형적 고용관계, 한정된 고용기간, 높은 이직률 등 고용관계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에서도 불안정고용(*precarious employment*)과 비정규 고용(*non-standard employment*) 및 비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sup>7</sup> 등 개념이 유행처럼 넓게 사용하고 있지만 혼용,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정규 고용과 비공식 고용의 혼용이 대표적이다(钱叶芳, 2018). 중국에서 불안정노동은 주요 임시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독립적 계약자, 호출근로자, 원·하청 근로자 등 비전형적 근로자를 지칭하며, 임시직(*contingent work*), 유연 취업(또는 유연 고용)(*flexible employment*)과 용역근로자(*Subcontract worker*) 등 용어가 사용되었다(李强, 2018; 钱叶芳, 2018; 李强, 2015; 肖红梅, 2015; 刘爱玉·黄俊平, 2012; 胡鞍钢·赵黎, 2006). 이와 같이 중국에서도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계약 기간 등의 측면에 주목하며 불안정노동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지만, 기존의 불안정노동 이론과 중국의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여 중국의 고용관계를 재분류한 작업은 부족한 편이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농민공은 주로 저임금 또는 임금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임금체불 등의 문제에 처해 있다. 앞서 농민공의 특징을 분석한 것과 같이 2018년 농민공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54.16%에 불과하며, 농민공의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을 맴돌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높은 주민소비가격지수(CPI)인데, 이것은 농민공의 실질임금 증가율을 끌어내려, 1993년과 2003년의 농민공의 실질임금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즉, 높은 물가지수는 이미 매우 낮은 농민공의 명목임금(*nominal wage*)의 실제적 수준을 더욱 낮게 만들고 있다(章元·高汉, 2011). 최근 중국국가통계국(2018)에 의하면 농민공들의 서비스 산업(50.5%) 종사 비중이 공업(49.1%)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일자리가 주로 저숙련, 단기 일자리 위주로 확장됨으로써 새

<sup>7</sup> 한국에서 *informal employment*는 비공식 고용으로 번역하는데 중국에서 비공식 취업으로 번역한다(서정희, 2015; 钱叶芳, 2018).

로운 비정형적인 고용과 더불어,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 문제를 양산했다. 농민공이 종사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농민공의 비율은 임금이 가장 낮은 다섯 업종에서 82.5%에 달했다(吴晓琪, 2018), 상대적으로 괜찮은 수준의 소득을 갖는 농민공은 장시간의 초과 노동과 고강도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唐美玲, 2013). 또한 임금 지속성 보장 측면을 살펴보면, 농민공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시근로형태와 계절제 근로형태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기 때문에 수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张玲玲·房宏君, 2016; 龙晓华·金维兴, 2010).

다음으로, 농민공 사회보험 불안정을 분석하기 전에 우선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를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2018)에 의해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sup>8</sup>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출산보험이 5대 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로보험은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양로보험(城乡居民社会养老保险)’<sup>9</sup>, 공무원 양로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양로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도시 근로자 기본 건강보험(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과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 건강보험(城乡居民基本医疗保险)으로 구성된다. 양로보험의 경우, 중국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양로보험’의 급여수준은 매우 낮고 2018년의 기준 최고 한 달 88위안(한화 1만 5,000원)이다.<sup>9</sup>

우선 중국 사회보험체계는 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오늘날 노동의 불안정성이 다양하고 심화해지고 있는

<sup>8</sup> 중국의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고 공적 연금으로서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도시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 가입자는 한국의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한 측면이 많으며, ‘도시와 농촌 주민 사회양로보험’의 가입자는 한국의 지역가입자와 비슷하다.

<sup>9</sup> 본 연구에서는 농민공의 사회보험에 가입현황에 대해 양로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 4가지 보험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출산보험을 따로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다. 먼저, 출산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고 국내에서는 농민공의 사회보험과 관한 연구의 대다수는 양로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4가지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张玲玲·房宏君, 2016; 谢勇·李放, 2009; 张翼·周小刚, 2013). 둘째, 국제 경험을 참고하고 중국 사회보험의 운영 현황을 결합하고 분석하면, 건강보험과 출산보험의 비슷한 보장 범위와 보장 대상을 감안하여, 중국 국무원 사무국은 「출산보험과 건강보험 통합의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全面推进生育保险和职工基本医疗保险合并实施的意见)」을 발표했고, 2019년 말까지 건강보험과 출산보험 두 보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중국의 5대 보험 중 출산보험을 의료보험에 포함하여 4대 보험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현황과 정합되지 않는다(凌敏, 2016; 赵娜·汪雯, 2015). 특히 직장을 자주 옮기고 지역 간 유동성이 높은 농민공에 대해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쉽게 배제 효과를 초래한다. 「2017년 인력자원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공보(2017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에 따르면 농민공의 양로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보험 가입률은 각각 21.64%, 21.72%, 27.24% 17.09%에 그쳤다.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양로보험의 경우는 양로보험이 지역 간 이동 절차가 복잡하고, 농민공의 높은 이직률과 지역 간 높은 유동성 때문에 가입 동기를 낮추며(何媛 外, 2015), 실업급여의 경우 조건이 엄격하고 대다수 농민공은 반복적인 지역 간 유동 및 시간제와 계절제 일자리를 종사하기 때문에 농민공이 실업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급여를 쉽게 수급받을 수 없었다(凌敏, 2016; 赵娜·汪雯, 2015). 건강보험의 경우는 중국의 중앙정부는 사회보험 가입의 기본적인 원칙을 제정하고 지방정부는 구체적인 규칙을 정할 여지가 있는데, 많은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가입시 양로보험도 같이 가입해야 하는 부가조건을 두어 농민공이 건강보험에 가입 동기를 떨어트리고 있었다. 게다가 사업주는 이윤 최대화하기 위해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주부담이 가장 높은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 동기를 낮추었다(赵一蓉, 2018; 凌敏, 2016). 또한 지방정부에서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투자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보험법 가입을 엄격하게 감독하지 않는다는 것도 농민공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하나의 이유다(凌敏, 2016; 赵娜·汪雯, 2015; 김병철, 2017).

위와 같이 임금수준, 고용관계, 사회보험 포괄성의 측면으로 불안정노동을 정의한 기존의 한국과 서구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농민공의 현황과 중국 내 기존 문헌들을 검토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 농민공이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단일 차원 혹은 단일 속성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연구했으며, 주로 비정규고용과 비공식 취업, 저임금 및 사회보험 배제 등을 각각 별도로 살펴보았다(钱叶芳, 2018; 李强, 2015; 肖红梅, 2015; 王丽平, 2013; 刘爱玉·黄俊平, 2012; 张彦, 2009; 胡鞍钢·赵黎, 2006). 특히, 구체적인 중국의 사회조사데이터를 바탕으로 불안정노동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분석한 연구는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과 국

제적으로도 부족하다. 본 연구는 중국의 맥락을 고려하여 고용관계를 분류하고 불안정성을 분석하려는 시도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① 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②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③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형계약, ④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의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어 임금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험의 배제 측면에서 농민공을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안정한 노동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동집단으로 구분하여 불안정성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차 중국노동력동태조사(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의 실증 자료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의 다차원적인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중국의 제도적 맥락이 이들의 노동불안정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V. 불안정노동의 고용형태 분류와 실증분석

### 1. 분석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을 분석하기 위해 공개된 2014년의 2차 중국노동력동태조사(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였다. 중국노동력동태조사(CLDS)는 2012년부터 2년마다 다단계군집, 층화추출법 및 노동력 규모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multistage cluster, stratified, PPS sampling)을 사용하고 중국 경내 29개성(29个省, 홍콩, 마카오, 대만, 티베트, 하이난성 외)에서 도농(城鄉) 지역사회의 추적범위에서 가구 단위로 전체 노동력(15~64세의 가구 성원)을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통해 농촌이나 도시 커뮤니티의 사회구조와 노동력 및 가정의 변화와 상호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한 조사이다. 조사는 중국의 노동력, 가구 및 커뮤니티 등 3차원에서 변동 추이를 수집하고 구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형성에 기여하고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중국노동력동태조사, 2014).

중국노동력동태조사(CLDS)는 2012년 1차 패널조사에서 303개 지역, 1만 612

개 가구, 1만 6,253명 노동자를 조사하였고 2014년 2차 데이터는 원 표본 가구 유지하면서 101개 지역, 2만 3,594명 노동자를 추가해 조사하였다. 또 중국노동력동태조사(CLDs)는 중국의 29개 성(省)에서 노동력의 현황 및 변화를 중점을 두고 있어 중국 표본조사 중 전국적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구원의 배경 및 개인 이력, 근로활동, 경제상황, 사회참여, 이주, 가구 여건(복지여건을 포함), 사회보험 가입 및 수급 현황 등에 대해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공을 연구대상으로, 2014년 중국노동력동태조사 2차 자료 중 농촌 호적을 가진 채 도시에서 6개월 이상 비농업에 종사하는 농민공 3,081명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불안정노동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불안정노동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에 고용형태에서의 불안정성, 임금의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보험의 배제 측면에서 농민공을 불안정노동집단, 다소 불안정한 노동집단, 다소 안정한 노동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동집단으로 구분하여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안정노동의 정도는 다시 세 가지 차원의 불안정성을 모두 경험하는 경우 '매우 불안정한 노동'으로, 3개 중 2개 이상 지표가 해당될 경우를 '불안정노동'으로, 하나만 해당될 경우를 '다소 불안정노동'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두 해당되지 않다는 경우를 '불안정하지 않은 노동'으로 구분하여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을 특징과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 2. 농민공과 다차원적 측면의 불안정노동

### 1) 중국노동시장과 다양한 고용형태

중국 농민공 불안정노동에 대하여 깊게 이해하자고 하면 불안정노동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고용불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노동시장의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 분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고용관계는 국제적 기준이나 한국의 종사상지위 분류체계와도 차이가 있어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달리 중국의 통계국이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는, 고용형태

와 종사상 지위의 분류를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으나 중국의 「노동계약법(수정안)」(劳动合同法, 2012)에 따라 고용관계 측면에서는 일반고용관계와 파견고용관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측면에서는 전일제 노동과 비전일제 노동을 구분할 수 있다.<sup>10</sup> 종사상 지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뉘지만, 중국 내 종사상 지위 구분은 복잡하여 학계, 노동계, 법계에서 노동자의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李强(2015)은 고용관계 측면에서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를 구분하며, 고용형태 측면에서 안정적 고용과 불안정고용을 구분한다. 뿐만 아니라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 비정형적인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한 연구(张丽宾, 2005; 覃曼卿, 2015), 시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비전일제 근로자에 관한 연구(赵玥·张照东, 2017; 尚春霞, 2009), 비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 혹은 유연 고용(flexible employment)<sup>11</sup> 및 비정규고용(non-standard employment)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하다(胡鞍钢·赵黎, 2006; 李强, 2002, 2004; 李焯红, 2003; 张彦, 2009; 张丽宾 外, 2005; 杨怀印·鞠志红, 2008). 이 중에서도 비공식 취업(非正式就业)과 유연 고용(灵活就业), 비정규직(非正规就业)에 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지만 용어가 혼용, 오용되어 혼란스러운 현상도 병존한다(钱叶芳, 2018; 陶红, 2017; 王永杰, 2020; 田思路·彭浏诚, 2014).

한국의 경우, 불안정노동의 사회경제적 집단인 비정규직 문제는 2000년 이후 현안으로 등장하였고(장신철, 2012) 비정규직 정의와 관련하여, 주로 고용형태와 종사상 지위를 둘러싸고 논의했으며(이승운 외, 2017a; 서정희, 2015), 다수의 연구들은 비정규직은 무기계약과 전일제 및 종속고용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서정희, 2015 재인용).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으며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Kalleberg, 2009), 학계, 노동계,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의할 때 이들의 고용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근로조건 등

<sup>10</sup> 파견고용의 정의는 한국과 비슷하나 일종의 임시적,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최소 2년 이상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명시했다. 비전일제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 미만 또는 일주일 동안 24시간 미만의 근로자를 지칭했다.

<sup>11</sup> flexible employment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분석할 때 자주 사용한 개념인데, 중국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상관없이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고용형태와 대응하는 용어로 간주하면 된다(张丽宾 外, 2005).

측면에 관한 논쟁이 있다(이승윤 외, 2017; 장신철, 2012; 이옥진, 2013). 관련 논의를 중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중국 내 연구들이 비공식 취업(informal employment)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중국에서의 비공식 취업은, 전형적인 취업 형태와 달리 노동시간의 비고정성, 고용관계의 비정형성, 임금의 불확실성, 사회보장에서 배제 등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고용형태로 설명되는데, 구체적인 정의에 따라 분류하면 당정기관, 국유기업 등의 공식부분이 아닌 ‘비공식’영역에서 취업한 노동자와 공식부문에서의 임시직 근로자와 비전일제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를 포함한다(李强, 2002, 2004; 李烨红, 2003; 张彦, 2009). 둘째, 유연 고용은 전형적인 표준적 고용형태의 취업과 비교되는 고용형태로 간주되며, 비공식 취업의 정의와 큰 차이가 없다. 유연 고용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고용주가 자주 사용한 고용수단으로 대부분 근로자가 주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형태’로 유연하게 고용된 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张丽宾 外, 2005; 杨怀印·鞠志红, 2008). 종합하면 중국 학계에서는 유연 고용과 비공식 취업은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杨怀印·鞠志红, 2008; 张彦, 2009; 钱叶芳, 2018). 셋째, 비정규고용(non-standard employment)에 대해서는 중국의 학계와 정부는 정규고용과 비정규고용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으나(陶红, 2017), 대부분 연구에서 비정규고용은 표준고용관계에서 벗어나, 비전일제 고용, 탄력제 고용, 용역·파견 고용, 계절제 고용, 임시적 고용, 한시적 고용, 독립적인 고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王丽平, 2013; 田思路·彭浏诚, 2014; 陶红, 2017; 钱叶芳, 2018). 뿐만 아니라 플랫폼경제의 발전에 따라 비정규고용을 전통 비정규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신 비정규고용을 구분한 연구도 있다(王永杰, 2020).

정리하면 중국에서는 현재 정규직 또는 안정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없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도 부재하다. 대다수 연구들은 전통적인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 및 사업단위(事业单位) 외의 부문을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sup>12</sup>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비공식부문에서 취직하거나 정부와 관련된 공식

<sup>12</sup> 비공식부문은 전통적인 국유기업과 정부 기관 및 사업단위(事业单位) 외의 비공유제 기업 및 신생의 프리랜서와 플랫폼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대부분 정의하고 있으며, 비정규부문에서 취직한

부분<sup>13</sup>에서 취직하더라도 불안정하게 단기계약으로 일하는 경우로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한 종사상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비정규고용, 비공식 취업, 유연 고용에 대한 위와 같은 논의를 보면, 한국의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의 논의와 매우 다른 측면으로 불안정노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노동시장은 사회적 맥락에 따라, 1) 공식과 비공식 부분의 구분과 2) 단위유형, 그리고 3) 무기계약 여부 및 단기 계약관계 등의 여부를 바탕으로 노동자의 고용관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중국은 사회경제적 변화의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노동시장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크게 나뉜다. 노동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식부문에서 취직한 정규직, 즉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이 가장 높은 반면,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 체결 또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이 가장 낮다. 더불어 비공식부문에서 무기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는 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보다 노동 안정성이 높다. 공식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단기계약 등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 불안정한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해고가 쉽다. 이들은 공식부문의 무기계약자, 즉 정규직의 결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유희노동력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분류는 표 1과 같다.

## 2) 농민공의 고용관계,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의 불안정성 분석

고용관계의 지속성과 지속에 대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고용불안정성 정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중국 내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고용관계와 단위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용관계의 지속성 측면은 비공식부문보다 공식부문에서 더 안정적이며, 고용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예측의 가능성 차원에서, 무기계약이 가장 안정적이며, 일용직과 같은 단기 및 무계약 상태에서 가장 불안정했다. 그러므로 중국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유형화하면 안정, 다

노동자도 비정규직에 모두 포함된다.

<sup>13</sup> 공식부문은 비공식부문에 비교한다면, 주요 공유제 단위유형으로 구성하고 일반적인 당정기관, 인민단체 및 사업단위, 국유기업 등 공유제 단위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정부기관, 공산당의 본부와 지사 기구, 사회보장학회, 지적재산권보호협회 등 부문은 공식부문을 간주할 수 있다.

표 1 중국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고용형태

부문	단위유형	계약관계
공식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정기관, 인민단체(党政机关, 团体): 정부기관(정부+공산당의 기관이 모두 포함이 된다); 인민단체(정부기관이 직접적 권한이 있고 단체의 운영 기금은 보통 중앙 및 지방 재정에서 조달됨)</li> <li>• 사업단위(事业单位): 사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국가 기관이나 다른 조직이 정부 재정이거나 국유자본을 이용하고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및 위생, 스포츠 등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조직</li> <li>• 국유기업(国有企业): 국가가 자산의 전체를 소유한 기업.</li> <li>• 집체기업(集体企业):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기업.</li> <li>• 촌락 위원회 등 지역 자치 단체(村委会等自治团体): 동 주민센터와 지방정부의 자치 단체와 비슷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계약의 형태로 단위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일단 편제정원(编制定员)<sup>14</sup>에 포함되고, 주로 안정적인 계약관계임.</li> <li>• 계약기간이 단기로 기간이 정해져 있음. 공식부문이지만 편제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임.</li> </ul>
비공식 부문	사업장이 있는 비공식부문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자기업;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기업으로 투자형태에 따라 합작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으로 구분하며, 이를 통칭하여 '3자 기업(三资企业)'이라고 부르기도 함</li> <li>• 개인(个人)기업: 개인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개체기업(个体企业)과 사영기업(私营企业, 民营企业)으로 구분됨. 8명 미만을 고용 시 개체기업(자영업자 포함), 8명 이상 고용 시 사영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기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근로자(하지만, 비공식부문에서 개인기업은 파산할 가능성 높은 편임).</li> <li>• 단기계약이거나 무계약으로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이 없는 비공식부문으로 주로 농업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파견 직장이 없는 가정부, 수제(手工?) 장인, 대리운전자 등 플랫폼 노동자 등이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농민으로 정의하고 통상적인 노동자와 같이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관계를 정하지 않음.</li> </ul>

소 안정, 불안정, 매우 불안정으로 4개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단위 유형 차원에서 공식부문이고 무기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은 고용관계의 지속성과 지속에 대한 예측의 가능성이 모두 높아 고용안정성이 높은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부문에서 무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관계의 지속성은 상대적으

<sup>14</sup> 편제정원은 중국 공식부문 직원이라는 일종의 신분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은 이런 편제정원에 속한 직원의 임금, 사회보험, 복리후생 등을 책임지고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의 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국유기업의 직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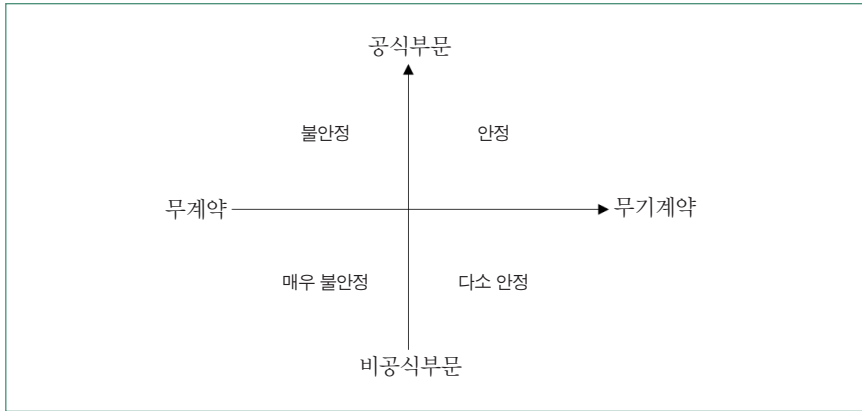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분류

로 약하지만 지속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 고용불안정성에 있어 다소 안정적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은 공식 부문에 종사하지만 비전형적 계약이나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시공(临时工)으로 불리며, 불안정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과 무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은 고용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불안정성은 그림 2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위의 분류에 따라, 농민공의 고용 불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노동력동태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고용 불안정의 경우는 전체 연구대상자 3,078명 중 고용 불안정(매우 불안정과 불안정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인 96.9%(2,981명)로 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을 체결한 농민공 및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과 무계약을 체결한 농민공의 비중이 매우 높다. 반면에 고용 안정(안정과 다소 안정 포함)에 해당하는 농민공은 3.1%(97명)로 공식부문에서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매우 희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이 불안정한 농민공 집단은 고용이 안정적인 농민공보다 31배나 많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 농민공은 사영기업과 민영 기업 등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적인 고용형태로 취직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万向东, 2008; 袁晓辉·张丽宾, 2006; 李强·唐壮, 2002). 중국 농민공의 고용형태는 대부분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과 무계약 상태로 하고

표 2 농민공 고용 불안정성

구분	고용형태에 따른 불안정성의 정도	빈도	%
안정	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26	0.8
다소 안정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71	2.3
불안정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형계약	201	6.5
매우 불안정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형계약 및 무계약	2,780	90.4
전체		3,078	100.0

및 실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 측면을 살펴보겠다. 고용안정성과 마찬가지로 임금의 수준을 안정, 다소 안정, 불안정, 매우 불안정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임금 수준에 따른 불안정성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의 불안정성을 분석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평균수준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의 높고 낮음을 구분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ffice)의 저임금 기준인 ‘전체 노동자 중위소득의 2/3보다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을 경우’에 임금/소득 불안정 집합에 속한다고 구분했다(이승윤 외, 2017a, 2017b; 백승호 외, 2017). 그러나 임금을 비교할 때 시간당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연구한 유럽국가와 달리 중국의 경우 국가통계국이 임금노동자의 중위임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시지역 임금노동자 월평균임금을 사용한다(厉以宁, 2015; 郭凤鸣·张世伟, 2011; 田丰, 2010). 본 연구에서도 도시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농민공이 농촌 지역에서 벗어나 주로 도시에서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농민공의 임금 불안정을 분석할 때는 농촌지역까지 포함된 중국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보다는 도시지역 임금노동자의 월평균임금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더불어 본 연구는 농민공의 임금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불안정성 분류 방법을 참고하고 농민공의 임금 불안정성을 더 면밀하게 구분했다. 즉 임금 수준에 대한 안정적인 집단과 불안정한 집단의 이분법이 아닌 고용관계에서와 같은 4개의 집단구분을 진행했다. 기존연구에서는 중위소득의 2/3를 분기점으로 임금이 안정적인 집단과 임금이 불안정한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중국 도시지역 임금노동자 월평균임금의 2/3를 임금 안정과 불안정의

표 3 농민공 임금 불안정성

구분	임금수준에 따른 불안정성의 정도	빈도	%
안정	도시 노동자 월평균임금 이상	241	7.8
다소 안정	도시 노동자 월평균임금과 도시 노동자 평균임금의 2/3 사이	432	14.0
불안정	도시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2/3 이하와 1/2 사이	602	19.6
매우 불안정	평균임금의 1/2(50%) 이하	1,806	58.6
전체		3,081	100.0

분기점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안정한 집단과 불안정한 집단에서 각각 안정과 다소 안정, 불안정과 매우 불안정 집단으로 보다 자세히 구분했다. 농민공의 임금 불안정성의 구체적인 구분은 표 3과 같다.

국가통계국(2015)에 따라 2014년 전국 도시 임금노동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4,745위안, 한화 약 82만 6,554원이다. 본 연구는 국가통계국이 2014년에 공개한 전국 도시 임금노동자 1인당 월평균임금(4,745위안)을 사용하여, 월평균임금을 4개 범주로 나누어 분석했다. 즉, 안정적 임금은 월평균임금(4,745위안)보다 높은 수준인 경우, 다소 안정은 월평균임금의 2/3(3,163위안)보다 높고 월평균임금보다 낮은 경우, 임금 불안정은 월평균임금의 1/2(2,372위안)보다 많고 월평균임금의 2/3보다 낮은 경우, 임금 매우 불안정은 월평균임금의 1/2(2,372위안)보다 낮은 경우다. 임금 불안정성의 분석결과, 매우 불안정한 임금수준으로 노동하는 농민공은 58.6%(1806명), 불안정에 해당하는 농민공은 19.6%(602명), 임금 다소 안정과 안정에 해당하는 농민공은 각각 14.0%(432명), 7.8%(241명)로 나타났다. 즉, 도시노동자 평균임금의 2/3 이하의 불안정한 임금으로 일하는 농민공의 비율이 78.1%로 전체 농민공의 2/3에 달했다. 앞서 고용불안정성을 경험하는 농민공의 비율(96.9%)을 살펴보면, 농민공에게서 고용불안정성과 임금불안정성이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임금이 불안정한 농민공의 비율이 고용불안정을 경험하는 농민의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 고용불안정성과 임금불안정성이 반드시 동시에 경험되지는 않아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다.

이어서 중국 농민공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한국 노동시장과 사회보험의 부정합성을 연구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4대 사회보험 중 하나

표 4 농민공 사회보험 불안정성

구분	사회보험 포괄성에 따른 불안정성의 정도	빈도	%
안정	4개 다 가입	236	7.7
다소 안정	3개 가입	152	4.9
불안정	2개 배제	203	6.6
매우 불안정	3개 배제와 모두 배제	2,488	80.8
전체		3,079	100.0

라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으나(이승윤 외, 2017a, 2017b; 백승호 외, 2017), 중국 농민공의 경우 제도의 내용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지역과 업종에 따라 중국 농민공들의 사회보험 가입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양로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가입한 경우가 많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업종 중 가장 높았다. 또한 농민공은 지역 간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실업보험의 가입 동기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본 연구는 이승윤 외(2017) 등의 사회보험 불안정성과 관련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앞서 설명한 연구(何媛 外, 2015; 谢勇 外, 2009, 赵娜 外, 2016; 김병철, 2017)의 농민공 사회보험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여, 중국 농민공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을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중국의 사회보험은 양로보험, 건강보험, 실업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과 출산보험의 5대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출산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한 경우는 안정적인 집단에 속하고, 세 가지의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다소 안정, 두 가지의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 불안정,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경우는 사회보험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집단으로 분류했다.

농민공 사회보험 불안정성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사회보험 안정한 집단에 속한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의 7.7%(236명)를 차지하고, 다소 안정적인 집단에 속한 비율이 4.9%(152명)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보험이 불안정한 집단과 매우 불안정한 집단에 속한 농민공은 각각 6.6%(203명)와 80.8%(2,488명)에 달하여, 약 87.4%에 해당되는 농민공은 사회보험 측면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何媛 外(2015) 등 연구에서 농민공의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매우 낮다

표 5 농민공의 고용불안정성과 임금 및 사회보험 불안정성의 관계

(단위: %)

		임금 안정성					사회보험 안정성				
		안정	다소 안정	불안정	매우 불안정	전체	안정	다소 안정	불안정	매우 불안정	전체
고용 안정 성	안정	0.1	0.2	0.3	0.3	0.8	0.2	0.3	0.1	0.3	0.8
	다소 안정	0.4	0.4	0.4	0.9	2.4	0.5	0.4	0.4	1.0	2.3
	불안정	0.8	1.3	1.5	3.0	6.6	1.2	0.8	1.0	3.4	6.4
	매우 불안정	6.6	12.0	17.3	54.5	90.4	5.7	3.5	5.1	76.1	90.4
	전체	7.9	13.9	19.5	58.5	99.8	7.6	5.0	6.6	80.8	100.0

는 것과 일치한다. 고용과 임금 불안정성과 마찬가지로 농민공의 사회보험 불안정성은 매우 높았으며, 여전히 고용관계에서 가장 높은 불안정성을 보였다.

중국의 노동시장은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으로 나뉘고 각 부문에서도 무기계약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인 경우와 단기계약직이나 무계약과 같이 불안정적 고용관계로 일하는 고용형태들이 있었다. 농민공의 경우 비공식 부문에서 단기계약 및 무계약의 형태로 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임금 수준이나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비율보다 높은 고용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은 농민공의 불안정성에 있어 중국의 특수한 맥락에서 형성된 고용관계가 노동불안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민공의 고용불안정성과 임금 및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 고용과 임금이 모두 안정된 농민공 집단은 0.1%에 그쳤고 고용과 사회보험 모두 안정된 농민공 집단은 0.2%뿐이었다. 반면에 고용과 임금 및 사회보험에서 모두 불안정성을 보이는 농민공 집단은 90.4%에 달했다. 또한 농민공의 임금과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은 고용 불안정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고용의 안정성이 농민공의 노동안정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식부문의 무기계약 노동자인 경우 임금과 사회보험도 함께 안정적이지만, 반면에 비공식부문에서 단기계약 또는 무계약 상태로 취직한 농민공은 임금과 사회보험포괄 수준도 매우 불안정한 것이다. 요약하면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임금과 사회보험의 불안정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에 있어 고용불안정성이

표 6 불안정노동의 정도에 따라 분석한 농민공의 불안정노동 분석결과

구분	다차원적 불안정노동의 정도	% (N)
불안정하지 않음	고용, 임금, 사회보험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하지 않음	0.6 (19)
다소 불안정	고용, 임금, 사회보험 측면에서 이 중 한 가지가 불안정	5.8 (180)
불안정	고용, 임금, 사회보험 측면에서 이 중 두 가지가 불안정	24.0 (739)
매우 불안정	고용, 임금, 사회보험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	69.4 (2,138)

핵심적인 속성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고용관계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농민공이 전체의 90% 이상이고(표 2 참고), 임금과 사회보험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농민공은 각각 58.6%(표 3 참고) 및 80.8%(표 4 참고)였다. 즉, 고용관계, 임금수준, 사회보험 포괄성은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농민공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정의한 분류에 따라 고용관계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으로 분류되는 농민공이 90.4%로 가장 높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로 측정된 불안정노동의 조합에 따라 농민공의 불안정성의 정도를 살펴보고 각 정도별로 불안정한 농민공 집단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 6과 같다. 표 6은 다차원적인 불안정노동을 '임금/소득 불안정성, 고용불안정성, 사회보험 불안정성'으로 개념화하여, 세 가지 측면의 불안정성을 모두 보여 주는 경우는 '매우 불안정한 노동'으로 정의하고, 세 가지의 측면 중 2개의 불안정성에 해당될 경우를 '불안정노동'으로, 하나만 해당될 경우를 '다소 불안정노동'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두 해당되지 않다는 경우를 '불안정하지 않은 노동'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불안정한 노동 집단에 속한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의 69.4%(2,138명)를 차지했다. 즉 2/3 이상의 농민공이 고용,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임금과 사회보험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은 0.6%(19명)로 나타났다.

중국 농민공은 임금이 높고 사회보험과 고용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관계에서 좋은 임금과 사회보험에 포괄된 일자리에 농민공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다음으로 불안정한 노동집단과 다소 불안정한 집단에 해당하는 농민공은 전체 농민공 중 각각 24%(739명)와 5.8%(180명)로 나타났다.

위에 제시된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 농민공 중에서 매우 불안정 노동집단과 불안정 노동집단은 모두 93.4%으로 농민공의 고용관계, 임금수준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이들의 노동불안정성은 매우 높다. 반면에 농민공의 안정 집단(불안정하지 않음)과 다소 불안정한 집단을 합쳐도 6.4%에 불과하고 특히 고용, 임금, 사회보험 모든 측면이 다 안정적인 농민공이 0.6에 그쳤다. 표 6에서 제시한 불안정의 하위 집단과 다소 안정의 하위 집단들이 차지한 구체적인 비율을 살펴본 표 5를 살펴보면, 중국 농민공 노동불안정성의 다차원적인 측면 중에서도 특히 고용 불안정성이 이들의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된다.

위에 표 1에서 분석된 중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바탕으로 중국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화하면서 형성된 고용의 불안정을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① 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② 비공식부문에서의 무기계약, ③ 공식부문에서의 단기계약 등의 비전형계약, ④ 비공식부문에서의 비전형계약 및 무기계약의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농민공은 호구제와 도시 지역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중국의 '이등공민'으로서 도시에서 가장 소외 계층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농민공들(90.4%)이 4가지 유형 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한 집단인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 및 무기계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관계의 불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되었다. 그리고 고용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은 낮은 임금수준과 사회안전망의 배제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중국 노동시장의 이원구조에서 도시지역 내 공식부문 무기계약직들의 내부노동시장으로 형성되는 가운데 농민공들은 유휴인력으로 활용되어 외부노동시장을 형성하며 쉽게 고용되고 쉽게 해고되는 불안정성을 보인다. 비공식부문의 단기계약 및 무기계약 형태, 또는 공식부문의 단기계약직으로 고용된 농민공들은 고용형태 측면에서 도시 내의 또 다른 주변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공식부문에

서 일하거나 공식부문에서 파견이나 용역계약 등 비전형적인 계약으로 일하는 농민공은 임금과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불안정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높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낮은 임금수준과 사회보험 배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농민공은 비공식부문에서 무계약 또는 비전형적인 단기계약의 형태로 안 좋은 일자리를 전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 VI. 결론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후인 2019년 말까지 농민공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6%로 노동시장의 1/3 이상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되고 확대되고 있는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고용의 불안정성, 임금의 불안정성, 사회보험으로부터의 배제로 인한 불안정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각각의 불안정성의 정도를 구분하고, 중국노동력동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 농민공 3,081명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불안정노동을 분석하며, 중국의 맥락에서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노동의 불안정성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중국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의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농민공과 ‘불안정한’ 농민공의 비율이 93.4%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농민공 집단의 비율이 69.4%로 전체 연구 대상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에 고용,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 지표가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난 농민공은 전체 연구대상의 0.6%에 불과하였다. 불안정노동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불안정성은 불안정 집단과 매우 불안정 집단이 전체의 96.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 매우 불안정한 집단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중국노동시장의 불안정노동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사적인 맥락에 따라 형성된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구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노동

시장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구분 외에도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약관계인데, 공식부문에서 취직한 정규직, 즉 무기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은 가장 높은 반면 비공식부문에서 비전형계약과 무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노동 안정성이 가장 낮았다. 공식부문의 안정적인 무기계약직의 노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유희인력이 필요한 경우, 공식부문이라고 하더라도 무계약자 또는 단기계약 등의 불안정적 고용관계로 인력이 충원된다. 임시공(临时工)으로 불리는 이러한 집단은 공식부문에서 취직했지만 비전형적 계약이나 단기계약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성을 보이는 집단이다. 농민공의 경우 이러한 공식부문의 불안정노동으로도 진입하지 못하고 절대다수가 비공식부문에서 무계약 또는 단기계약으로 일하고 있었다.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형성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인 농민공의 노동 불안정성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의 의의와 함의를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농민공에 대한 연구가 많지만 대부분 기존연구는 농민공의 임금이나 사회보험 등 단일적 차원에만 주로 집중하고 있었다. 이에 본 논문은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고용, 임금, 사회보험 세 가지 차원을 조합하고 불안정노동의 정도를 다시 4가지로 나누어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관계의 경우,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중국내 논의를 고려하여 새롭게 고용관계를 분류해 보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농민공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농민공의 저학력, 저숙련 등 인적자본과 불안정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파악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즉, 부족한 인적자본으로 농민공이 당연하게 불안정적 고용형태와 낮은 임금수준의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분석이 다수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을 4가지로 구분하고, 이어 임금수준과 사회보험 포괄성을 포함해 노동의 불안정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농민공의 고용불안정성은 임금수준 및 사회보험 측면에서의 불안정정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용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임금과 사회보험의 불안정성도 함께 높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차적으로 농민공의 고용 불안정성 개선을 통해 임금과 사회보험의 불안정성을 함께 개선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준다. 특히 비공식부문에서 무계약 또는 단기계약으로 일

하는 형태의 고용 불안정성 측면이 농민공의 높은 불안정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는 점은 정책개발에 함의를 준다. 둘째, 본 연구는 불안정노동자의 형성과 노동의 불안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준다. 본 연구는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중국 맥락에서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구분하여 고용불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서구국가뿐만 아니라 한국과 비교하여도 중국의 불안정노동은 농민공이라는 제도적 유산과 개방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특수성이 낳은 노동불안정성의 모습을 보인다. 특히 중국의 복잡한 고용형태들을 살펴보면 ‘비정규직’만으로는 불안정노동을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노동의 불안정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노동자를 둘러싼 역사적 제도경로성과 제도들의 조합에 대한 다각적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농민공이 확대된 배경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며 중국의 도농이원경제구조(城乡二元经济结构)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는 모순적으로 도시 내 이원구조를 형성시켰으며, 농민공은 주변부 노동시장에서 ‘이등 공민’의 불안정노동자로 계층화된 모습을 보였다. 개혁개방 이후 농촌의 생산력이 향상되면서 대량의 잉여노동력이 나타났고, 반면 도시에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지는 제도적 사회적 맥락이 불안정노동자인 농민공을 형성했다. 여기에 더해 식량배급제가 축소되고 현금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호구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도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민공은 도시의 비공식부문에서 가장 불안정적 고용관계인 무계약 또는 단기계약의 형태로 일하며 저임금과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었다. 도시 내 불안정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농민공은 대도시 도시정책의 누계 점수제(落户积分制)로 인하여, 도시 내부 ‘현지인’과 ‘외지인’이라는 ‘신 이원구조(新二元结构)’를 이루게 되었고, 앞으로도 불안정노동의 계층화는 이들이 중국의 취약화(precariatization)(Standing, 2011)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중국의 호구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도적 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어떻게 노동시장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호구제의 경로의존성과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중국의 도농이원구조는 이후, 도시 ‘일등 공민’과 농촌 ‘이등 공민’의 불평등 구조를 형성시켰다. 이는 이후, 농

촌의 기술발전과 경제개발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 나아가 매우 안정적인 도시의 공식부문의 정규직 노동자와 도시에서 떠도는 농민공으로 구성된 매우 불안정한 노동자 집단으로 구성된 불평등한 노동시장구조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한국의 지역 간 노동 유동인구, 도농격차에 따른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노동력 이동과 관련한 여러 노동시장 격차 가능성에도 함의를 줄 수 있다. 현재 중국의 호구제도는 약화되었으나 제도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한 영향은 잔존하며, 불안정노동 양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이후 연구에도 함의를 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호구제와 지방 제도의 경로의존성 문제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성노동을 다차원 측면에서 살펴보고 특히, 실증자료를 통해 그 심각성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농민공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실증분석이 매우 부족하였던 것에 주목하고, 궁극적으로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불안정노동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의 맥락에서 고용관계를 새롭게 분류하고 고용관계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에 ‘정도(degree)’를 제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농민공의 불안정노동 확대의 영향요인과 구체적으로 제도적 경로의존성 어떻게 작동되어 농민공의 심각한 불안정노동 문제를 확대시키는지와 관련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농민공의 노동불안정성에 미친 다른 핵심적 제도요인은 노조와 같은 이해대변 메커니즘의 부재도 들 수 있다. 농민공의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고용불안정성이 높고, 권익 보호 의식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 범위의 전문적인 농민공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농민공은 중국사회의 구성원이자 쉽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중국의 빠른 경제개발에 기여한 노동자다. 이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모두의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투고일: 2021년 2월 17일 | 심사일: 2021년 6월 28일 |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0일

## 참고문헌

- 가소만·김보화·고권혁. 2019. “중국 농민공(農民工) 및 유수아동(留守兒童)이 전생애(Life-span)에 걸쳐 경험하는 교육 불평등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 『글로벌교육연구』 11권 2호, 59-90.
- 강남훈. 2013. “불안정노동자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10권 2호, 12-42.
- 김병철. 2010. “중국 농민공의 현황과 문제, 그리고 대책.” IOM 이민정책연구원.
- \_\_\_\_\_. 2017. “중국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 농민공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3권 2호, 95-132.
- 김수현. 2012. “청년일자리의 현황과 과제: 청년고용문제: 줄어드는 청년취업자, 청년일자리.” 『월간 복지동향』 170호, 4-8.
- 김유휘·권혜영·이승윤. 2015. “중국 이중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제도주의적분석.” 『한국사회정책』 22권 1호, 243-284.
- 김인. 2013. “중국 도농 불평등구조와 농민공의 변화.” 『중소연구』 36권 4호, 219-241.
- 백승호. 2014. “서비스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 분석.” 『한국사회정책』 21권 2호, 57-90.
- 백승호·안주영·이승윤. 2017. “한국과 일본의 불안정노동시장 비교연구: 불안정노동의 젠더적·직업계층적 분절.” 『한국사회정책』 24권 2호, 1-29.
- 서정희. 2015. “비정규직의 불안정 노동: 비정규 고용형태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에서의 배제.” 『노동정책연구』 15권 1호, 1-41.
- 신동윤. 2013. “농민공의 도시 시민화 가능성과 전망: 신세대 농민공을 통한 가능성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63호, 213-237.
- 은석인. 2018. “중국의 호구제도와 도시-농촌 관계: 배경, 문제, 개혁.”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대회발표집, 54-54.
- 이민자. 2015. “중국 호구제도 개혁과 농민공 2세의 시민화.” 『新亚细亚』 22권 1호, 90-115.
- 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a.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후마니타스(주).
- 이승윤·백승호, 김미경·김윤영. 2017b.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 『비판사회정책』 54호, 487-521.
- 이옥진. 2013. “시간제 근로(Part-Time Jobs)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 적용 가능성과 결정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29권 2호, 135-153.
- 장신철. 2012.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에 대한 새로운 고찰.” 『산업관계연구』 22권 1호,

55-77.

- 고용노동부. 2018. 『2018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고용노동부.
- 白南生·李靖. 2008. “农民工就业流动性研究.” 『管理世界』 7期, 70-76.
- 陈晓丽. 2011. “留守儿童心理健康问题及对策研究.” 『知识经济』 19号, 64-65.
- 迟帅·金银. 2012. “新生代农民工群体特征研究.” 『当代青年研究』 5期, 76-80.
- 杜景山. 2013. “新生代农民工的定义, 特征及管理策略.” 『现代商业』 24期, 287-288.
- 郭凤鸣·张世伟. 2011. “教育和户籍歧视对城镇工和农民工工资差异的影响.” 『农业经济问题』 6期, 35-42.
- 何媛·何露·徐坤·方荣军. 2015. “全国农民工欠缴社保问题现状及优化方案.” 『现代经济信息』 第007期, 155-156.
- 胡鞍钢·杨韵新. 2001. “就业模式转变: 从正规化到非正规化: 我国城镇非正规就业状况分析.” 『管理世界』 2期, 69-78.
- 胡鞍钢·赵黎. 2006. “我国转型期城镇非正规就业与非正规经济(1990-2004).” 『清华大学学报』 3期, 111-119.
- 纪韶. 2011. “中国农民工就业状态的调研.” 『经济理论与经济管理』 39(2), 93-99.
- 季彩君. 2016. “从学习差异看留守儿童的教育困境: 基于留守与非留守儿童的实证调查.” 『上海教育科研』 4, 41-46.
- 李春生. 2018. “北京市人口半城镇化研究.” 『北京社会科学』 6, 4-13.
- 李强. 2015. “农民工非正规就业研究综述.” 『岭南学刊』 6, 124-130.
- \_\_\_\_\_. 2018. “农民工非正规就业: 类型差异与治理方向.” 『探求』 1, 99-103.
- 李强·唐壮. 2002. “城市农民工与城市中的非正规就业.” 『社会学研究』 6, 13-25.
- 李焯红. 2003. “促进我国非正规就业发展的社会保障制度分析.” 『湖北社会科学』 10, 12-14.
- 厉以宁. 2015. “二元劳动市场造成好坏职业应缩小差距.” 『东方企业文化』 6期, 1-2.
- 凌敏. 2016. “新生代农民工失业保险参与意愿及影响因素分析.” 『江西农业学报』 28(11), 129-134.
- 刘爱玉·黄俊平. 2012. “就业不稳定与无保障: 基本表现, 成因与前景.” 『中国青年研究』 4, 86-89.
- 刘林平·万向东·张永宏. 2006. “制度短缺与劳工短缺: “民工荒” 问题研究.” 『中国工业经济』 8, 45-52.
- 刘其赞. 2019. “农民工城镇落户现状, 问题及推进策略.” 『安徽农学通报』 13, 2.
- 龙晓华·金维兴. 2010. “农民工建筑劳务正规就业问题研究.” 『建筑经济』 6, 19-21.
- 孟繁元·田旭·李晶. 2006. “我国农民工工伤保险存在的问题及对策分析.” 『农业经济』 2,

47-49.

- 彭希哲·赵德余·郭秀云. 2009. “户籍制度改革的政治经济学思考.”『复旦学报: 社会科学版』3(1), 1-11.
- 钱叶芳. 2018. “非标准雇佣与非正规就业: 区分, 交集与调整.”『中国劳动』4, 8.
- 尚春霞. 2009. “从《劳动合同法》看我国非全日制用工.”『劳动保障世界』9, 66.
- 覃曼卿. 2015. “劳务派遣适用范围的规范检视与规制路径再思考.”『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29(002), 18-23.
- 唐美玲. 2013. “青年农民工的就业质量: 与城市青年的比较.”『中州学刊』193, 77-81.
- 陶红. 2017. “非标准雇佣趋势与就业者保护研究.”『法制博览』4期, 205-206.
- 陶卫华·杜娟. 2008. “大户籍改革: 中国户籍制度变迁50年.”『小康』2期, 18-22.
- 田丰. 2010. “城市工人与农民工的收入差距研究.”『社会学研究』2, 87-105.
- 田思路·彭浏诚. 2014. “论使用从属关系下非典型劳动者保护的多元化.”『中国劳动』8, 18-21.
- 万向东. 2008. “农民工非正式就业的进入条件与效果.”『管理世界』1, 63-74.
- 王建. 2017. “正规教育与技能培训: 何种人力资本更有利于农民工正规就业?”『中国农村观察』1期, 113-126.
- 王丽平. 2013. “我国非正规就业发展探析.”『宏观经济管理』9, 63-64.
- 王永杰. 2020. “平台型非标准就业与劳动力市场规制.”『北京工业大学学报』2020. 5. 3., 94-100.
- 魏玉霞. 2018. “我国城乡二元结构的成因, 特征及对策研究.”『科技经济导刊』7, 151.
- 吴晓琪. 2018. “基于行业工资的居民收入差距研究.”『工业技术经济』3期, 137-146.
- 夏杰长. 2019. “新中国服务经济研究70年: 演进, 借鉴与创新.”『财经经济』10, 3.
- 肖红梅. 2015. “国内就业稳定性问题研究历程与文献述评.”『北京劳动保障职业学院学报』3, 25-30.
- 谢勇·李放. 2009. “农民工参加社会保险意愿的实证研究: 以南京市为例.”『人口研究』5, 63-70.
- 徐晓新·张秀兰. 2016. “将家庭视角纳入公共政策: 基于流动儿童义务教育政策演进的分析.”『中国社会科学』6, 151-169.
- 杨怀印·鞠志红. 2008. “我国灵活就业的雇佣关系.”『经济管理』11, E7.
- 姚先国·叶环宝·钱雪亚. 2016. “人力资本与居住证: 新制度下的城乡差异观察.”『广东社会科学』2, 5-11.
- 叶晨钰·王清. 2013. “当代中国户籍制度变迁分析与思考.”『学理论』10, 61-63.

- 俞玲. 2012. “农民工低收入的经济学解析.” 『经济论坛』 1, 104-106.
- 袁晓辉·张丽宾. 2006. “完善社会保障制度提升就业促进能力.” 『中国劳动』 12, 20-21.
- 张斌峰. 2007. “中国“农民工”界定的理论创新: 评《中国农民工问题解读》.” 『江南论坛』 11, 58-60.
- 张丽宾. 2005. “对劳务派遣发展现状的研究.” 『中国劳动』 6(1), 13-17.
- 张玲玲·房宏君. 2016. “农民工社会保险参保影响因素的实证研究: 以北京市建筑业农民工为例.” 『中国劳动』 10, 59-63.
- 张彦. 2009. “非正规就业: 政策调整和制度创新.” 『社会科学』 6, 56-66.
- 张翼·周小刚. 2013. “农民工社会保障和就业培训状况调查研究.” 『调研世界』 2.
- 张英. 2017. “农民工群体特征及职业培训研究: 以建筑业为例.” 『安徽农业科学』 45(10), 245-248.
- 章元·高汉. 2011. “城市二元劳动力市场对农民工的户籍与地域歧视.” 『中国人口科学』 5, 4-9.
- 赵娜·汪雯. 2016. “农民工社会保险参保行为的影响因素.” 『科技资讯』 14(20), 155-155.
- 赵一蓉. 2018. “城乡二元结构背景下城乡居民社会养老保险风险评估.” 『管理观察』 2, 91-93.
- 赵玥·张照东. 2017. “非全日制用工超时劳动问题研究.” 『中国劳动』 3, 36-40.
- 周毕芬. 2016. “农民工城镇非正规就业的社会效应分析.” 『内蒙古农业大学学报: 社会科学版』 18(6), 12-16.
- 邹杰玲·王玉斌. 2018. “团聚的藩篱: 大城市落户门槛如何阻碍农民工子女随迁.” 『财经科学』 12, 67-79.
- 国家统计局. 2019~2013. 『2018年中国农民工监测调查报告』. 国家统计局.
- 人力资源与社会保障部. 2018. 『2017年度人力资源和社会保障事业发展统计公报』. 人力资源与社会保障部.
- 北京上学路上公益促进中心. 2010. 『2019年度中国留守儿童心灵状况白皮书』. 北京上学路上公益促进中心.
- Cui, Y., D. Nahm, and M. Tani. 2015. “Wage Differentials and Employment Choice of Chinese Rural-Migrant and Urban-Resident Workers.” *Australian Economic Review* 48(4), 382-399.
- ILO. 1993.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Adopted b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January 1993).

- \_\_\_\_\_. 2011. *From Precarious Work to Decent Work. Policies and Regulations to Combat Precarious Employment*, Actrav Background Document 23.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 2016. *Non-Standard Employment Around the World: Understanding Challenges, Shaping Prospects*.
- Kalleberg, A. L., 2000. "Non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Part-time, Temporary and Contract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341-365.
- Kalleberg, A. L. 2009. "Precarious Work, Insecure Workers: Employment Relations in Transi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4(1), 1-22.
- Knight, J. and L. Yueh. 2004. "Job Mobility of Residents and Migrants in Urba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4), 637-660.
- Kroon, B. and J. Paauwe. 2014. "Structuration of Precarious Employment in Economically Constrained Firms: The Case of Dutch Agriculture."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24(1), 19-37.
- Pi, J. and P. Zhang. 2018. "Rural-Urban Human Capital Disparity and Skilled-Unskilled Wage Inequality in China." *Review of Development Economics* 22(2), 827-843.
- Polivka, A. E. and T. Nardone. 1989. "On the Definition of Contingent Work." *Monthly Lab. Rev.* 112, 9.
- Standing, C. and S. Kiniti. 2011. "How Can Organizations Use Wikis for Innovation?" *Technovation* 31(7), 287-295.

## Abstract

## An Empirical Study on the Work Precariousness of Chinese Migrant Workers

Yu Liu Chung-ang UniversitySophia Seung-Yoon Lee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anding migrant peasants (Nong-Min-Gong) in the special socio-economic context of China in a multi-dimensional manner in terms of employment, wage and social insurance, and to empirically analyze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precarious work.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looked at the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migrant peasants and their various instability experiences, and systematically reviewed existing studies on precarious work. Based on this, precarious work is classified into four degrees: very unstable, somewhat unstable, somewhat stable, stable, and unstable labor using data from the 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CLDS, 2014) and was analyzed in three aspects: employment, wage, and social insur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ose too precarious in all three aspects, that is “very precarious” and “precarious” migrant peasants accounted for 93.4%, revealing that the precariousness of Chinese migrant peasants was very serious. In addition, the fact that precarious employment could be interpreted as the main cause of the serious precarious labor of migrant peasants, which has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n the multidimensional precariousness of the migrant peasants have implications since there is a limit to explaining precarious work only by ‘non-regular workers’ or ‘atypical laborers’ when looking at the complex

employment types in China. The results can also have implications for the need to analyze rapid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the need to analyze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pathways surrounding workers and the combination of institutions from multiple perspectives. In other words, the study has implica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on the path dependence of the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ombination of the urban-rural dual structure to form the precarious workers in China, represented by migrant peasants.

**Keywords** | Chinese migrant peasant, precarious work, Chinese Labor-force dynamics survey,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